

의안번호	2217272
의 퇴 인	박은정의원
회 답 일	2026.4.24.
추계번호	26D126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3억 4,4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7억 6,400만원(연평균 3억 5,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차관급으로 임명	344	339	349	361	372	1,764	353

주: 본 추계 결과는 헌법재판소의 2026년도 인건비 예산 등을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 시행에 따른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9조의4 (헌법재판연구원)	-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40명 이내로 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 - 원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함 ※현행법은 원장을 헌법연구관으로 보하거나 1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함 - 헌법재판연구원장 밑에 부장, 팀장, 교수, 연구관 및 연구원을 두도록 함 (현행) 교수에 대한 규정 없음 (개정안) 교수 직위를 명시하고, 헌법연구관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19조의4 (헌법재판연구원)	○	추계: 원장을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																																																	
		×	(미첨부-3호: 정원규정 삭제 관련) 법률상 정원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에 비해 정원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으나, 현 시점에서 정원 확대 여부, 확대 규모 등을 추정하기 어려움 ※ 헌법재판연구원 부서별·직급별 정원 현황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정원</th></tr><tr><td>연구원장</td><td>헌법연구관 또는 1급</td><td>1</td></tr><tr><td>연구교수부장</td><td>헌법연구관 또는 2·3급</td><td>1</td></tr><tr><td rowspan="4">제도연구팀</td><td>헌법연구관 또는 3·4급</td><td>1</td></tr><tr><td>헌법연구관 또는 4·5급</td><td>1</td></tr><tr><td>4·5급</td><td>1</td></tr><tr><td>5급</td><td>5</td></tr><tr><td rowspan="3">기본권연구팀</td><td>헌법연구관 또는 4급</td><td>1</td></tr><tr><td>4·5급</td><td>1</td></tr><tr><td>5급</td><td>3</td></tr><tr><td rowspan="2">비교헌법연구팀</td><td>헌법연구관 또는 4급</td><td>1</td></tr><tr><td>5급</td><td>6</td></tr><tr><td rowspan="3">교육팀</td><td>헌법연구관 또는 4급</td><td>1</td></tr><tr><td>헌법연구관 또는 4·5급</td><td>3</td></tr><tr><td>4·5급</td><td>3</td></tr><tr><td rowspan="5">기획행정과</td><td>4급</td><td>1</td></tr><tr><td>5급</td><td>2</td></tr><tr><td>6급</td><td>2</td></tr><tr><td>7급</td><td>3</td></tr><tr><td>다군(전문경력관)</td><td>1</td></tr><tr><td colspan="2">합 계</td><td>38</td></tr></table>	구 분		정원	연구원장	헌법연구관 또는 1급	1	연구교수부장	헌법연구관 또는 2·3급	1	제도연구팀	헌법연구관 또는 3·4급	1	헌법연구관 또는 4·5급	1	4·5급	1	5급	5	기본권연구팀	헌법연구관 또는 4급	1	4·5급	1	5급	3	비교헌법연구팀	헌법연구관 또는 4급	1	5급	6	교육팀	헌법연구관 또는 4급	1	헌법연구관 또는 4·5급	3	4·5급	3	기획행정과	4급	1	5급	2	6급	2	7급	3	다군(전문경력관)	1	합 계
구 분		정원																																																		
연구원장	헌법연구관 또는 1급	1																																																		
연구교수부장	헌법연구관 또는 2·3급	1																																																		
제도연구팀	헌법연구관 또는 3·4급	1																																																		
	헌법연구관 또는 4·5급	1																																																		
	4·5급	1																																																		
	5급	5																																																		
기본권연구팀	헌법연구관 또는 4급	1																																																		
	4·5급	1																																																		
	5급	3																																																		
비교헌법연구팀	헌법연구관 또는 4급	1																																																		
	5급	6																																																		
교육팀	헌법연구관 또는 4급	1																																																		
	헌법연구관 또는 4·5급	3																																																		
	4·5급	3																																																		
기획행정과	4급	1																																																		
	5급	2																																																		
	6급	2																																																		
	7급	3																																																		
	다군(전문경력관)	1																																																		
합 계		38																																																		
		—	(미대상: 교수 직위 명시 관련) 개정안은 헌법재판연구원 내에서 실제로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의 직위를 법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현재 교육담당 인력의 직급에는 변동이 없으며, 봉급 및 수당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추가적인 교수 인력 증원이 없다는 전제 하에, 교수 직위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추가 재정소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비용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 전후 헌법재판연구원장의 보수 차액 및 증원되는 비서실 직원의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를 추계함
 - 현행법에서 헌법재판연구원장은 헌법연구관으로 보하거나 1급인 일반직국가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으므로 차관급 공무원과의 보수차액을 산정
 - 신설되는 헌법재판연구원장 비서실의 직원 수 및 직급은 차관급인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비서실 직원 수를 준용하여 3명으로 하고, 직급은 각 5급, 7급, 9급으로 가정
 -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현재 헌법재판연구원장 관련 별도 비서실 정원은 없음
 -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기관부담금 요율 및 1인당 자산취득비 단가는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¹⁾
- 헌법재판연구원장 비서실 신설에 따른 사무공간은 기존의 유휴공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은 헌법재판연구원 정원을 40명 이내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정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시점에서 증원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정원 확대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는 추계에서 제외
- 개정안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 헌법재판연구원장 비서실 직원 신규 임용에 따른 PC, 물품 구입 관련 자산취득비는 추계 첫해인 2027년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1)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기관부담금 요율, 기관 설립 1인당 자산취득비 전망(2026.3.30. 기준)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3.5	3.0	3.0	3.0	3.0	3.0
기관부담금 요율(%)	13.067	13.129	13.193	13.285	13.379	13.475
1인당 자산취득비(천원)	4,980	5,078	5,180	5,283	5,389	5,49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보수

- 헌법재판연구원장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차관급)의 연봉액을 준용하고, 비서실 직원 3명의 보수는 헌법재판소 동일 직급의 연봉액을 준용한 후 직급보조비 및 각종 수당을 반영

[표 2] 1인당 보수액: 2026년

(단위: 천원)

구 분		연봉액	연봉 외 급여				합 계
			소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헌법재판 연구원장	개정안(차관급) (A)	151,149	13,800	11,400	1,920	480	164,949
	현행(1급)(B)	120,853	11,400	9,000	1,920	480	132,253
	차액(A-B)	30,296	2,400	2,400	-	-	32,696
	5급	85,836	5,400	3,000	1,920	480	91,236
	7급	62,389	4,560	2,160	1,920	480	66,949
	9급	41,414	4,500	2,100	1,920	480	45,914

주: 1. 각종 수당 중 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 1인만 적용하고, 연가보상비 등은 개인차가 있으므로 제외함
 2. 호봉제 급여 대상자(6급 이하)의 연봉액에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을 포함함
 3. 1급 공무원 급여는 헌법재판소 각목명세서상 별정직 1급상당 공무원 인건비를 준용
 자료: 헌법재판소 2026년도 예산 각목명세서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헌법재판연구원장의 차관급 임명에 따른 보수차액과 증원인원의 보수에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을 적용하면 2027년 2억 4,4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12억 9,500만원으로 추계

[표 3] 보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년 보수액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헌법재판연구원장 보수차액	33	34	35	36	37	38	179
5급	91	94	97	100	103	106	499
7급	67	69	71	73	75	78	366
9급	46	47	49	50	52	53	251
합계	237	244	251	259	267	275	1,295

주: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기관부담금

- 보수 총액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연도별 기관부담금요율을 적용하면 2027년 3,2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1억 7,200만원으로 추계

[표 4] 기관부담금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기관부담금	32	33	34	36	37	17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기본경비

- 2026년도 헌법재판소 예산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21.8%²⁾를 앞서 추정된 보수 총액에 적용하면, 2027년 5,3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2억 8,200만원으로 추계

[표 5] 기본경비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기본경비	53	55	56	58	60	28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자산취득비

- 증원되는 비서실 인력 3명에 대한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정부기관 설립 1인당 자산취득비 단가를 적용하면 2027년 1,500만원으로 추계

[표 6] 자산취득비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자산취득비	15	-	-	-	-	1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헌법재판소 2026년도 예산 중 기본경비를 인건비로 나누어 산출

마.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차관급으로 임명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3억 4,4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7억 6,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7]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보수	244	251	259	267	275	1,295
기관부담금	32	33	34	36	37	172
기본경비	53	55	56	58	60	282
자산취득비	15	—	—	—	—	15
합 계	344	339	349	361	372	1,764

주: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헌법재판소의 2026년도 인건비 예산 등을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 시행에 따른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상욱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상욱	02-6788-4673	flyhigh@assembly.go.kr